

보도 시점 2026. 9. 22.(화) 14:00
(2026. 9. 23.(수) 조간) 배포 2026. 9. 22.(화) 09:00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26년도 국가R&D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 산·학·연 연구자 대상,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 개최
- 대형과제 연구수당 편중을 막는 개인별 상한 신설 등 주요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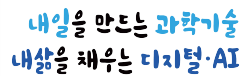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소속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이하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행정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연구목표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 도입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수당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개선 등이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질의응답과 의견청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수당 기준개선 등 각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제도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도경 (044-202-6950)
		담당자	사무관	정 담 (044-202-6951)
			사무관	서승호 (044-202-6953)



□ 개요

- (목적)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26.8.26 의결)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설명

* 평가체계 개편(우수과제 인센티브 중심), 무빙타겟 도입, 연구수당 배분 개선 등

- (일시/장소(안)) '26.9.22(화) 14:00~15:30 /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대강당^{*}

*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생명산업연구원 2층(고속터미널 인근, 300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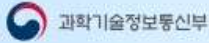
- (참석자)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연구제도혁신과장,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기관 실무자 등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논의내용) '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연구제도 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등 연구현장 의견 청취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10 (10')	•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성과평가 정책국장
14:10 - 14:50 (40')	• '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	과기정통부 담당사무관
14:50 - 15:25 (35')	•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플로어
15:25 - 15:30 (05')	• 마무리	

※ 세부 진행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 –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 전환



- 결과중심 등급제·점수제 폐지로
새로운 과제평가체계 필요
 - ☑ **우수과제 선별 + 인센티브로 과제평가 대폭 변경**
 - 우수성과 외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별하여 **후속연구** 등 연계 지원
 - 부적절 과제(불성실, 의무위반 등) 패널티 부여
- 연구목표 변경 절차·기준 미비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 한계
 - ☑ **무병타겟(Moving Target) 제도 전면 도입**
 -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신속 차질차** 및 **범부처 승인기준**(negative 방식) 도입
- 일률적 기준 및 관리체계 미비로
평가위원 제척·회피 관리 한계
 - ☑ **제척기준 보완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모호한 **제척·회피기준** 사전별 구체화
 - 부적절 평가위원 관리 기준 마련

연구비 집행 자율성 책임성 강화



- 단계평가 지연 또는 장비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중단 우려
 - ☑ **단계 종료 시 잔액 자동이월(필수 인건비 즉시 집행)**
 - ☑ **연구 시설·장비 도입기간 제한 완화**
 - 단계종료 2개월 전 → 과제종료 일정기간 전
-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연구물입 저해
 - ☑ **5천만원 이하 R&D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 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신설 추진 중(연내)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세부지침 개정 추진
- 간접비 비율에 대한 불규칙한
고시로 연구 관리비효율성 초래
 - ☑ **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ex.~12.31)**
 - ☑ **간접비 비율 변경 절차 간소화**
 - 승인 → 통보
-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연구사기 저하
 - ☑ **[현행]+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
 - (현행) 총액 상한(전체 인건비의 20% 이내)
 - 배분 상한(1인당 연구수당 총액의 70% 미만)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 부처별·회계법안별 상이한 정산
규정으로 증빙 등 행정부담 가중
 - ☑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 통일**
 -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개발비 인정·불인정 사례집 마련
- 단계·연차보고 모두 동일한 연구비 실적
요구로 행정낭비 초래
 - ☑ **연차보고서 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삭제**
 - 단계보고서, 국제공동연구 등은 보고의무유지
- 시작·종료일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의
연차보고서 제출로 행정부담 초래
 - ☑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예외 신설**
 - [1차 연도] or [최종 연도]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
→ [차년도] or [최종보고서]에 통합 제출

국제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사용
관리체계 미비로 성과관리 등 부실
 - ☑ **해외기관의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 강화**
 - [일반형] 해외기관 사용실적 첨부 + 타당성 평가
 - [공동기관형] 국가별 사용기준 제시(혁신법 준수 원칙)
- 연구기관의 전문성·협상력
부족으로 연구성과(IP) 확보 미흡
 - ☑ **국제공동연구 전주기 IP 권리 확보 지원**
 - 공고 시 명확하게 명시 + IP 사전교육 + 전문가
활용 및 컨설팅 지원 + 충분한 IP 협상기간 허용 등